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01
----------	-------

발의연월일 : 2019. 2. 13.

발의자 : 노웅래 · 이상민 · 전현희  
송옥주 · 표창원 · 김병기  
이철희 · 박찬대 · 유승희  
이상현 · 송갑석 · 민홍철  
김경진 · 백혜련 · 김철민  
안민석 · 신창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평가기본계획이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과평가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안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평가기본계획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하는 성과평가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	제5조(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u> <u>성과평가기본계획을 대통령령</u> <u>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u> <u>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u> <u>한다.</u>